

I. 한국실행연구학회 회칙 및 규정

제 정 2023년 1월 0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실행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Action Research)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실행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와 학교 및 교실 등의 교육현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행교육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조사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5. 실행교육 분야에 관한 자문과 제안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기관회원
4. 명예회원

- 1) 정회원은 (1)교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유치원과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교육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 (3)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학 관련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은 자로 한다.
- 2) 기관회원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평생 교육기관 및 기타 독립연구소와 시민사회단체로 한다.
- 3) 협력회원은 본회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맺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한다. 협력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면제된다.
- 4)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가운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다.

③ 본회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소수의 사회 저명인사와 이전 회장단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기관회원 및 협력회원, 명예회원의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원 자격 회복)

전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조 제 3호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최소 격년 1회 정기 학술대회 동안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에 결의 또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에 의결사항과 학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14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1/4 출석 및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 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5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선임이사 30인 내외.
4. 당연직이사.
5. 감사 2인.
6. 고문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 선임 규정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고문단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들)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3. 선임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위촉한다.
4.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당선자가 위촉한다.
5. 당연직이사는 본회 회장, 부회장, 분과 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편집위원이 된다.

제18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본회의 부회장 중 한명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및 징계.
6. 분과회 설치 승인.
7. 선거관리.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관련 사안 승인.
9. 회비.
10. 기타 업무.

제26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28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상설위원회

제29조 (상설위원회 설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제30조 (상설위원회 구성)

- ①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회: 유치중등 교사들의 단합 및 교육
 2. 홍보·조직위원회: 학회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회원관리.
 3. 학술지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학술상 수상작 심사 및 선정.
 4. 학술대회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5. 연구윤리위원회: 연구 윤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

6. 윤리규정위원회: 학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정비.
 7. 국제협력위원회: 국외의 교육 관련 학회 및 기타 관련 학회와의 협력 활동 추진.
 8. 학술연구위원회: 학술세미나, 포럼, 연구회 등의 조직 및 운영.
-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해당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사무국의 구성

제31조 (사무국의 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처리한다.

제9장 분과회

제32조 (분과회)

- ① 본회에는 실행연구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회의 구성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된다.
 1. 본회 목적에 합치되는 분과회 회칙.
 2.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분과회 회원 명단.
- ③ 분과회의 명칭은 해당 분과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정)

-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 ②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③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회비의 책정)

정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증을 받아 책정한다.

제35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38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II. 한국실행연구학회 윤리 헌장

한국실행연구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학회와 관련한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학회 임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기초 위에서 우리 학회는 한국 교육의 실제와 학문 분야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윤리 헌장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분야의 발전과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원은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료 연구자의 성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격려의 태도를 갖는다.
3. 회원은 타 전공 영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공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4.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 계층, 연령, 인종, 종교, 지역 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5.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인용, 표절, 자료의 위조와 변조 및 저작권 침해, 중복 게재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회원은 연구 중 취득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연구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8. 회원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9. 회원은 각종 심사와 자문에 임할 때,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Ⅲ. 한국실행연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정의)

본 학회 및 회원의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금한다. 이때 학회 활동 관련 행위는 연구윤리 헌장에 규정된 활동, 학회지 간행, 학술논문 발표에 관한 것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무단도용 및 표절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기 간행 연구 성과의 재투고

3. 연구 데이터의 조작

4.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 ① 연구 기여가 없이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 ②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

5. 같은 원고를 타 학회지와 본 학회의 그것에 동시에 이중적으로 투고하는 행위

6. 기타 학회 연구윤리 헌장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3조(제재)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종류 및 수위는 다음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2.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또는 박탈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을 선발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된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소명 기회)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3년 1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V. 교육실행연구 논문투고 규정

1. 일반 사항

- 1) 『교육실행연구』는 교육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하며, 각 호의 논문 접수는 3월 말, 9월 말에 마감한다.
- 2) 논문 응모 시 주 저자와 공동 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3) 응모 논문은 이전에 공개된 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동일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하거나 이중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타 학회(학술)지에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동시 투고 또는 게재하거나 타 논문 및 연구 결과를 표절 또는 무단 인용한 경우 2년 이상 논문 응모를 금지하며, 필요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4) 논문 게재 시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접수

- 1) 응모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별첨 "논문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본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으로 한다. (www.kaar.or.kr) 단, 접수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2) 논문 제출자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 3) "논문 작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4)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3. 논문 심사

접수된 논문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필요시 제출된 논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저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4.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1) 응모 논문 제출 시 심사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20만 원, 일반 논문은 1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 3) 지정된 논문 분량(20쪽)을 초과한 경우 쪽당 1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 납부한다.

5. 논문 접수 문의처

한국실행연구학회 메일 actionres@naver.com

V. 교육실행연구 간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행연구학회의 학회지인 『교육실행연구』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발간 목적 및 내용)

「교육실행연구」의 발간 목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질적인 실행을 장려하고, 각자의 연구 성과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 본 학회지는 교육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교육 전반에 관한 실행과 논의를 중점으로 한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 조교수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교육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한국교육 연구를 선도 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한다.
- ④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실행연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4년제 대학 조교수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학문 영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기능)

- ① 학회지 발간 계획을 수립한다.
-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④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⑤ 학회지를 편집하고 출판한다.
- ⑥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접수거부 또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의 투고자격을 확인 후 투고된 논문의 형식 및 적정성에 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 분야에 따라 분과별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자 추천을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자들 중 심사자 2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을 마치고 그 결과를 회신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회신 시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⑥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수정표를 학회 메일로 회신한다.
- ⑦ 기간 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본래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제3의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 ⑧ 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규정에 따라 재심사한다.
- ⑨ 논문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결과를 재심한다.
- ⑩ 상기 과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 ⑪ 초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2단계로 판정한다. 이 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 ⑫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⑬ '수정 후 게재'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논문과 논문수정표를 투고메일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⑭ '수정 후 재심'은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 ⑮ '게재 불가'의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표 1>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게재 판정기준		판정	판정 후 절차
심사자 1의 결과	심사자 2의 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심사자 2의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심사자 2의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수정, 보완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심사자 2의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심사자 2의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수정, 보완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심사자 1, 2의 재심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7조(논문 심사 기준)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 ①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 ② 연구 내용의 적절성
- ③ 연구 방법 (표집,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적절성
- ④ 연구 결론, 제언의 객관성 및 공정성
- ⑤ 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 및 사회적 기여도
- ⑥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및 가독성
- ⑦ 목차, 인용, 각주, 참고 문헌 등의 정확성

제8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단, 최종 결과 후에는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논문 게재 원칙)

- ① 본 학회지에 일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 당시에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자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하여 동일인은 당해 호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제1저자)로 1개 논문,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 연구진으로 투고하는 1개 논문, 총 2개 논문까지 투고 가능하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제1저자를 의미하며,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교신저자를 별도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투고자가 논문에 이를 표기한다.
- ④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 접수 순서에 따라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논문 투고 방법)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논문 작성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 할 논문 원문에는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본 학회에서 별도 마련해 놓은 '논문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③ 응모 논문은 이전에 공개된 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동일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하거나 이중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타 학회(학술)지에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동시 투고 또는 게재하거나 타 논문 및 연구 결과를 표절 또는 무단 인용한 경우 2년 이상 논문 응모를 금지하며, 필요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투고자는 위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파일을 학회 투고메일을 통해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논문 접수 시기)

논문 접수는 3월 말, 9월 말에 마감한다. 단,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논문 접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학회지 발간 시기)

본 학회지는 연 2회 (5월 31일, 11월 30일) 정기 발행한다.

제13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에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논문 제출시에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매년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한다.
- ②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20만원, 연구비를 수혜받지 않은 논문은 1편당 10만원(별쇄본 10부 별도)을 납부한다.
- ③ 원고 초과 매수는 규정된 분량(20쪽) 외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VI. 교육실행연구 논문 작성 안내

1. 일반 규정

가. 투고 신청서, 논문 제출은 학회홈페이지(www.kaar.or.kr)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한다.

나.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교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대로 출판해도 무방한 상태로 제출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다. 연구자의 인적사항(소속과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와 주소), 논문제목을 별지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라. 논문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회지 발간 규정에 따른다. (학회지 발간 규정 제13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참고)

- ① 편집용지: B5
- ② 여백주기: 위 19, 아래 19. 좌우 22, 제본 0, 머리말 12, 꼬리말 9
- ③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구 분	줄간격	글꼴	정렬 방식	크기	장평	자간	들어 쓰기	내어 쓰기	좌우여백		문단간격	
									좌	우	위	아래
논문제목	160	휴먼명조	가운데	14	100	0	0	0	0	0	0	0
저자이름	160	휴먼명조	오른쪽	10	100	0	0	0	0	0	0	0
큰 제목	180	휴먼명조	가운데	12	100	0	0	0	0	0	0	0
중간제목	170	휴먼명조	혼합	11	100	0	0	0	0	0	0	0
작은제목	170	휴먼명조	혼합	10	100	0	10	0	0	0	0	0
본 문	170	휴먼명조	혼합	10	100	0	10	0	0	0	0	0
인 용 문	150	휴먼명조	혼합	9.5	100	0	10	0	25	25	0	0
요 약 문	150	휴먼명조	혼합	9.5	100	0	10	0	5	5	0	0
각 주	130	휴먼명조	혼합	9	100	0	0	13	13	0	0	0
참고문헌	160	휴먼명조	혼합	10	100	0	0	30	0	0	0	0

2. 세부 규정

가. 논문의 제목 표기 방식

논문의 제목은 상단의 가운데에 제시한다.

나. 저자명 및 소속 표기 방식

- ① 저자명: 성명(소속)
(예시) 000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② 복수 저자: 제1저자 성명(소속)
제2저자 성명(소속)
(예시) 000(경인교육대학교, 교수)
000(경인초등학교, 교사)
- ③ 본문의 말미에는 논문 심사 일정을 덧붙인다.

다. 요약문 제시 방식

- ① 국문요약 15줄 내외로 하여 저자의 소속을 표기한 줄의 아래 부분에 제시한다. 요약문의 끝부분에는 3-5개 가량의 주제어를 제시한다.
- ② 영문초록은 논문의 마지막 쪽에 제시하되, 1쪽을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그리고 그 말미에는 영문 키워드를 3-5개 가량 제시한다.

라. 제목 제시 방식

- ① 큰 제목 : 로마자 대문자 (예시: II. 주역의 성격)
- ② 중간제목 : 아라비아 숫자 (예시: 1. 상수역과 의리역의 종합)
- ③ 작은제목 : 전각 괄호숫자 (예시: (1) 상수역의 출현)

마. 본문 작성 방식

- ①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미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 혹은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 ②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단,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는 사용을 금한다.

바. 인용문 작성 방식

- ① 직접 인용하는 내용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고(2줄 이하), 긴 경우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기술한다. 인용문을 따로 떼어 기술할 경우에는 인용문의 위아래에 한 줄씩 비워서 본문과 구

분하여 기술한다.

- ② 인용한 문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전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문의 경우 : “교사는 교과구의 구현체이다”(유한구, 2001: 34).
“교사는 교과구의 구현체이다”(유한구 외, 2001: 34).
 - 영문의 경우 : “교과는 성현이다”(Eliade, 1945: 34).
“교과는 성현이다”(Eliade et al, 1945: 34).

사. 참고문헌 작성 방식 (수정사항: 참고문헌 예시 변경, 국문이름간 가운데점, 국문 참고문헌 진하게 양식 지정, 영문 이탤릭체 적용)

-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참고문헌은 동양서와 서양서를 구분하여 배열하며, 참고문헌의 배열은 동양서를 한, 중, 일 순서로 먼저 배열하고, 서양서는 그 뒤에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 표기는 기본적으로 APA(미국심리학회) 양식을 따른다.
- ② 국문 저작 및 편집 문헌
 - 김호권(1986). **현대교수이론**. 서울: 교육출판사.
 - 이홍우·이환기·김광민(편)(2001). **마음과 교과**. 서울: 성경재.
- ③ 국문 번역문
 - 島田虔(1980). 朱子學と陽明學. 김석근·이근우(역)(1986). **주자학과 양명학**. 서울: 까치.
 - Dewey, J.(1919).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역)(198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④ 국문 논문
 - 이홍우(1994). 교과와 생활의 관련: 센스와 넌센스. **교육이론**, 7(1), 1-20.
 - 박종덕(1994). **사단칠정논변의 교육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⑤ 서양 저작 및 편집 문헌
 - Otto, R.(1923). *The Idea of the Hol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maz, K.(1995). Grounded theory. In J. A. Smith, R. Harré, & L. V. Langenhove (Eds.), *Rethinking methods in psychology* (pp. 27-49). London: Sage Publications.
 - Smith, J. A., Harré, R., & Langenhove, L.(1995). *Rethinking methods in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⑥ 서양 논문
 - Oakeshott, M.(1971). Education: The engagement and its frustr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1), 43-76.

아. 표와 그림 제시 방식

- ① 표는 본문 중에 삽입한다. 표제목은 표의 상단에 장 단위로 <표-1>, <표-1>과 같이 일련번호와 함께 제목을 붙이며, 자료 출처는 표의 하단에 표시한다.
- ② 표와 관련된 것은 모두 가운데 정렬방식으로 편집한다.
- ③ 표를 그릴 때는 최상단과 최하단은 굵은 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가는 선으로 그리며, 좌우에는 그리지 않는다.

자. 용어와 기호 표기 방식

- ①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인명 및 지명은 모두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영문 표기가 필요 경우에는 먼저 한글로 표기하고, 그 옆에 괄호를 붙여 그 속에 영문표기를 기입한다. 그러나 한글 용어의 경우에 필자가 판단에 따라서 한자를 단독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논문 작성 예

교육실행연구
The Journal of Action Research
2023,

논문 제목(국문)*1 <휴먼명조 14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제목 각주(*): 논문 관련 사항 기재(연구비지원논문, 학위논문, 또는 기타 사항)

투고자 성명**<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오른쪽>
(소속 기관, 직위)

<< 요약 >>

국문 요약 <휴먼명조 9.5pt 문단모양 혼합>

주제어 :

I. 큰 제목<휴먼명조 12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1. 중간 제목<휴먼명조 11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1) 작은 제목<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본문 내용¹⁾<휴먼명조 10pt 문단모양 혼합>

* (연구비 지원이나 학위 논문 관련 내용이 있으면 넣어주세요)

** 교신저자, ddd@dddd.ac.kr

1) 각주내용 <휴먼명조 9pt 문단모양 혼합>

인용문<휴먼명조 9.5pt 문단모양 혼합>

II. 큰 제목<휴먼명조 12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1. 중간 제목<휴먼명조 11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1) 작은 제목<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본문 내용<휴먼명조 10pt 문단모양 혼합>

<표 1> 표 제목<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학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그림 1] 그림 제목<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Ⅲ. 큰 제목<휴먼명조 12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1. 중간 제목<휴먼명조 11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1) 작은 제목<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혼합>

본문 내용<휴먼명조 10pt 문단모양 혼합>

참고문헌<휴먼명조 14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휴먼명조 10pt 문단모양 혼합>

교육부 (2015). **2015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김선열 외 (2010). 21세기 창의적 인재 육성 방향과 과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 ORM 2010-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차경수, 모경환 (200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허창수, 장인실, 박철희 (2010). 다문화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제언. **교육과정연구**, 28(4), 77-101.

홍길동 (2016). 좋은 사회과 수업으로서 “숙의하는 수업”을 위한 실행연구: 교사 신념과 수업 실제의 정교화. **시민교육연구**, 47(4), 1-36.

Coiro, J., Knobel, M., Lankshear, C., & Leu, D. J. (Eds.). (2008).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New York, NY: Lawrence Erlbaum.

Tomlinson, C. (2001). *How to differentiate instruction in mixed-ability classroom* (2nd e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Miller, J. L. (1992). Shifting the boundaries: Teachers challenge contemporary thought. *Theory into Practice*, 31(3), 245-251.

Ng-A-Fook, N. (2009). Inhabiting the hyphenated spaces of alienation and appropriation: Currere, language, and postcolonial migrant subjectivities. In J. Nahachewsky & I. Johnson (Eds.), *Beyond presentism* (pp. 87-103).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Rios, F. (2011). *Fram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a global age: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human right*. Paper presented at the 2011 KAME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Jeonju, South Korea.

Abstract

영문 제목 <휴먼명조 14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투고자 영문 성명<휴먼명조 10pt 진하게 문단모양 오른쪽>
(소속 기관 영문명)

영문 초록 내용 <휴먼명조 9.5pt 문단모양 혼합>

Key Words: 영문 키워드

편집위원회

위원장 : 백선희(경인교육대학교)
위 원 : 이혜정(경인교육대학교, 부위원장)
김사훈(한국외국어대학교)
최보금(나사렛대학교)
강이화(부산교육대학교)
박일수(공주교육대학교)
백준형(경인교육대학교)
이윤희(경북대학교)
엄문영(서울대학교)
심우정(한남대학교)

교육실행연구 (제1권 제2호)

2023년 11월 30일 인쇄

2023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한국실행연구학회

발행인: 장 인 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경인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420호

Tel: 031-470-6360

www.kaar.or.kr/ actionres@naver.com

제작: 도서출판 가람문화사